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03
----------	-------

발의연월일 : 2026. 5. 8.

발 의 자 : 이건태 · 한준호 · 박희승  
박균택 · 박성준 · 전현희  
복기왕 · 양부남 · 진선미  
김우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을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하며,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금융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고자 함(안 제1조, 제18조제1항 및 제33조의2 신설).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안정 및”을 “안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의 육성

제5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탄소중립금융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산업은행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효율적 자금 공급 및 협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소중립금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u>안정</u>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8조(업무)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p> <p>1. ~ 7. (생략)</p> <p><u>&lt;신설&gt;</u></p> <p>8. (생략)</p> <p>②·③ (생략)</p> <p><u>&lt;신설&gt;</u></p>	<p>제1조(목적) ----- ----- -----<u>안정,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u> 및----- ----- ----- ----- ----- -----.</p> <p>제18조(업무) ① ----- ----- ----- -----.</p> <p>1. ~ 7. (현행과 같음)</p> <p>8. <u>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의 육성</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제33조의2(탄소중립금융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산업은행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효율적 자금 공급 및 협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금융기</u></p>

관으로 구성된 탄소중립금융협  
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소중립금융협의  
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  
한다.